입법동향 - 2024년 7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1
2.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조례」 ····· 5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9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11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21
2.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 2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1.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38
2. 의회 도서 자료실 신착도서 목록 ····· 44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결산서 의회 제출 조례 제정 가능여부 ···· 54
2.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지자체 기금에 출연 가능여부 ····· 61

Ⅵ. 법령 해석 사례

1. 하나의 행위가 두개의 법률 위반 시 적용 법률 ····· 67
2.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하도급의 범위 ····· 75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0. 충청남도조례 제5703호, 2024. 7. 10.,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최근 **독거** 및 **치매 노인**과 **사회적 고립 인구 증가**로 **돌봄**의 **필요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제3조～제4조).

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6조～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2곳(충남,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전북자치도는의 **65세 이상 인구**는 **43만8,060명**으로 **17개 시·도 중** 전남·경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통계 '24.7.11.)

○ 우리 도에서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통적 돌봄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를 **도입**하여 노인(독거, 치매) 및 장애인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0.] [충청남도조례 제5703호, 2024.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충청남도민을 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이용자가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에게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5호, 2024. 6. 10., 제정】

□ 소관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 구축** 및 **산업보안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제3조～제5조).

다. 산업보안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3곳(경기, 인천, 충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산업스파이**는 **부정경쟁방지법(약칭)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뜻하면서 **산업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내 **다른 국가** 혹은 **다른 회사**에 넘기는 **사례**를 칭하는 것으로 **지난 3년**(2021～2023)간 **우리 도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적발 현황**은 2021년 2건(피의자 3명), 2022년 2건(피의자 5명), 2023년 3건 (피의자 12명)으로 건수대비 **피의자**가 **크게 증가**함. (전북도민일보 2024.4.22.)

○ **산업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도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 6. 10., 인천광역시조례 제7295호, 2024. 6.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 보호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위해 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핵심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3. **“중소기업 등” 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마. **대학 및 연구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관내 **산업핵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업보안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
3.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산업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업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과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수준 및 역량
2.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관리 인력 및 현황
3. 중소기업 등의 산업핵심기술 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산업보안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보안 수준 진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2. 산업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지원
3.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강화 교육
4. 산업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핵심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관내 산업보안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39호, 2024. 7.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 **시·도지사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입주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함(제29조의6).

나.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두고(제29조의7제2항)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같은 조제8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관련조례: 없음

○ **산업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함.

○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 또한, **시·도지사 소속**으로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 현재, 우리 도는 타 시·도(경기, 광주,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와 달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일부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시마다** 5만원, 10만원 또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제7조의2).

나. 정원에서의 금지행위(제8조의6).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전북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수목원과 정원**의 **규정**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현행 시행 중인 우리도 정원관련 조례에는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각의 조례**를 **통·폐합**하는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전북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협력사업, 정원치유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용·소득 창출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원관리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정원문화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정원시설의 조성 및 지원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조성 활동 관련 홍보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예, 화훼, 조경, 경관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문화 및 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생활 속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교육, 심포지엄, 캠페인 등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문화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산업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간행물 발간
4.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5. 정원문화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그 밖에 정원문화사업 기반시설 구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 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도지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도지사는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사업과 관련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박람회의 개최)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3. 29.,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464호, 2024. 3.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대아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수목로 94-3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휴원일)

①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3. 취사행위

4. 상업행위 및 게시판 등에 광고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 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관람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국회도서관, 2024-10호, 통권 제248호, 최창수】

◇ **영국은** 2024년 5월 24일에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하였다.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자국**의 **경쟁법 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은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가진 **사업자**를 **지정**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략적 시장지위**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요건 및 친경쟁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에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플랫폼시장**에서의 **위반행위**를 **규율**하고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을 마련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2024년 2월**에 **업계**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2024년 5월**에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 기존 경쟁법과 별도로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규제하려는 영국의 최신 법률이 우리의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제어: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디지털시장 전략적 시장지위 사업자 지정, 디지털시장 기업결합 신고기준

□ 도입

❍ **영국**은 2019년에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조사한 후, **디지털 시장**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오프라인 시대**에 **확립**된 기존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 및 **「기업법」**(Enterprise Act 2002)만으로는 온라인 **디지털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디지털시장**에 **특화된 규정**이 **논의**되었다.

- 2021년 7월에 '신규 디지털시장 친경쟁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고, 2022년 5월에 의회 개원 국정연설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 2023년 4월에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일부 수정·보완되었다.
- 2024년 5월 24일에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이하 '동법')이 제정되었다.

❍ **동법**은 기업통상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and Trade)이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고, 대부분의 규정은 **2024년 8월경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은 다음 [표 1]과 같이 **6개 부(Parts)**와 **부칙(Schedules)**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영국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의 구성

부(Part)	세부 사항
제1부(디지털시장)	디지털시장을 규제할 신규 법체계를 도입하여 '전략적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통제(제1조~제118조)
제2부(경쟁)	기존 「경쟁법」 및 「기업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법집행 권한을 강화(제119조~제146조)
제3부(소비자보호법 집행)	소비자보호법 침해유형을 특정하고 법집행 권한을 강화하며 벌금 부과 규정을 명시(제147조~제223조)
제4부(소비자 권리와 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특정하여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계약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명시(제224조~제310조)
제5부(기타)	외국 규제당국과의 조사 지원 방법을 규정(제311조~제329조)
제6부(일반)	해석, 고지, 규칙제정권, 시행일 등을 규정(제330조~제340조)
부칙	각 규정의 세부 사항, 타법 개정사항 등을 규정(제1호~제30호)

❍ 특히 동법은 **경쟁시장청**이 영국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SMS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우리 정부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SMS 사업자' 지정에 관한 동법 제1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디지털시장 관련 규정

1. 개요

❍ 동법 제1부(디지털시장)는 8개 장(Chapters)과 1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그 세부 사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제1부(디지털시장) 구성

부(Part)	장(Chapter)	세부 사항
제1부 디지털 시장	제1장(개관)	▪ 총 8개 장의 주요 내용(제1조)
	제2장(전략적 시장지위)	▪ 'SMS 사업자' 지정 권한(제2조~제8조) ▪ 경쟁시장청의 'SMS 사업자' 조사·통지 절차 및 지정기간(제9조~제18조)
	제3장(행위요건)	▪ 경쟁시장청의 의무 부과 절차(제19조~제25조) ▪ 경쟁시장청의 집행 권한 및 명령 절차(제26조~제35조) ▪ 요건 관련 약정 준수 의무(제36조~제37조) ▪ 최종제안제도[5] 운영 방법(제38조~제45조)
	제4장(친경쟁요건)	▪ 경쟁시장청의 권한 및 조사 절차(제46조~제50조) ▪ 친경쟁명령(pro-competition orders) 절차(제51조~제56조)
	제5장(기업결합 신고요건)	▪ 기업결합 신고/승인 요건 및 집행 절차(제57조~제68조)
	제6장 (조사 권한 및 준법보고서)	▪ 경쟁시장청의 'SMS 사업자' 조사 권한(제69조~제82조) ▪ 준법보고서 제출 의무(제83조~제84조)
	제7장(법집행 및 항소)	▪ 각 요건 미준수 시 적용되는 벌칙과 벌금, 집행 및 항소 절차(제85조~제92조) ▪ 정보 파기·조작, 허위정보, 임원의 방해행위 등에 대한 형벌(제93조~제98조) ▪ 추가 법집행 절차(제99조~제102조) ▪ 재심신청 절차(제103조)
	제8장(행정절차)	▪ 조사기간 연장 등(제104조~제105조) ▪ 권한 행사/위임, 규제방식 조정, 정보공유(제106조~제109조) ▪ 부담금 부과 권한, 역외적용, 용어 정의(제110조~제118조)

❍ 제1부(디지털시장)의 골자는 아래 2가지이다.

- 경쟁시장청은 관련 사업자가 ‘SMS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SMS 사업자’로 지정한다(제2조~제18조).
- ‘SMS 사업자’는 ① 동법에 규정된 ‘행위요건’(conduct requirements), ② 경쟁시장청이 제시하는 ‘친경쟁요건’(pro-competitive interventions), ③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요건’(reporting requirements)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제19조~제68조).

2. ‘SMS 사업자 지정요건’

❍ **경쟁시장청**은 ‘디지털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동법에서 정한 **‘SMS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SMS 사업자’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한다. 동법에서 **‘디지털활동’**이란,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 디지털콘텐츠 제공** 및 그 밖에 이러한 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관련 사업자의 **디지털활동**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SMS 사업자’**로 **지정**된다.

(1) ‘영국과의 연관성’(link to the UK)이 존재해야 한다. 아래 각각의 경우에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

- ○ 상당한 수(significant number)의 영국 이용자들이 관련 사업자의 디지털 활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 관련 사업자가 디지털활동과 연관되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 ○ 관련 사업자의 디지털활동 또는 그 수행방식이 영국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이며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2)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지배력’(substantial and entrenched market power)과 ‘중요한 전략적 지위’(status of strategic significance)를 가져야 한다.

○ **'실질적이고 확고한 시장지배력'** 과 관련하여, **경쟁시장청**은 향후 최소 **5년 이후 관련 사업자의 디지털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예측**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시장에서 관련 사업자를 'SMS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예견되는 경쟁의 폐해, 디지털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 **'중요한 전략적 지위'** 를 보유한 경우는 아래 각각의 경우이다.

- 디지털활동에서 상당한 **절대적 수치** 또는 **상대적 규모**(significant size or scale)의 **지위**를 **달성**한 경우
- **다수의 다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업자의 디지털 활동**을 **이용**하는 경우
- **시장지배력**이 해당 디지털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경우
- **시장지배력**이 다른 사업자들의 **디지털활동**과 관련된 **행동방식**을 **결정**하거나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관련 기간'** 동안 디지털활동과 관련된 **'전 세계 매출총액'**이 **250억 파운드**(약 44조 원)를 **초과'** 하거나 **'영국 내 매출총액'**이 **10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를 **초과'** 해야 한다.

○ **'관련 기간'** 이란 사업자의 **매출총액 추산일 직전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전전 12개월의 매출 총액이 직전 매출총액을 초과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전전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

○ 관련 기간 사업자의 **'전 세계 매출총액'** 이란, 디지털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 총액**을 의미한다. 관련 기간 사업자의 **'영국 내 매출총액'** 이란 디지털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국 내 이용자**나 **고객**과 **관련**된 **매출총액**을 의미한다.

❍ **경쟁시장청**이 관련 사업자를 **'SMS 사업자'** 로 **지정**하기로 **결정**하면, 지정기간은 'SMS 사업자' 지정 **결정통지서 교부일 다음 날부터 5년**이다. **'SMS 사업자'** 로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SMS 사업자’ 의무사항

(1) 행위요건

❍ **‘행위요건’** 이란, 공정한 거래, 공개된 선택권, 신뢰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사업자의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SMS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및 소비자와 갖는 상호관계를 규율한다.

❍ 동법에서는 ‘SMS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준수사항]

- ○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래한다.
- ○ 불만·분쟁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갖춘다.
- ○ 명확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정확하고 접근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디지털활동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설명한다.
- ○ 사용자가 정보에 따른 효과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options, default settings)을 제공한다.

[금지사항]

- ○ 차별적 약관·조건·정책을 다른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 디지털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 제품보다 자신의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 모든 사업부분에서 디지털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지배력을 실질적으로 증대하거나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행위
- ○ 끼워팔기/결합판매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디지털활동의 사용 및 접근, 다른 사업자의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친경쟁요건

❍ **‘친경쟁요건’** 이란, ‘SMS 사업자’의 디지털시장 내 독과점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시장청이 ‘SMS 사업자’에 부과하는 요건을 의미한다. 이에 경쟁시장청은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해당 디지털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친경쟁개입' (pro-competitive interventions)을 할 수 있다.
- 적절한 경우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친경쟁명령' (pro-competitive order)을 내리고,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 '친경쟁개입' 을 반복할 수 있다.

(3) 기업결합 신고요건

❍ 'SMS 사업자' 는 자신의 기업결합이 아래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경쟁시장청에 신고해야 한다.

- 기업결합의 결과 'SMS 사업자' 가 취득하는 '영국과 연관된 법인' (UK-connected body corporate)의 주식·의결권 지분이 다음 각각의 요율로 증가하는 경우: '15% 미만 → 15% 이상' , '25% 이하 → 25% 초과' , 또는 '50% 이하 → 50% 초과'
- 기업결합을 위해 'SMS 사업자' 가 '영국과 연관된 법인' 의 주식·의결권을 취득하는 대가 금액이 '2천 5백만 파운드(약 4백 40억 원)' 이상인 경우

❍ 경쟁시장청은 신고된 기업결합이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불이행에 대한 제재

❍ 'SMS 사업자' 가 동법의 행위요건, 친경쟁요건, 기업결합 신고요건을 각각 불이행하는 경우, 경쟁시장청은 정액(fixed amount) 또는 일일 요율(daily rate)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관련 사업자에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행위요건 또는 기업결합 신고요건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총액(total value of the worldwide turnover)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 친경쟁명령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총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 , '불이행 발생일마다 전 세계 일일 매출총액(total value of the daily worldwide turnover)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 , 또는 이 2가지 벌금을 조합한 금액

❍ 또한 경쟁시장청은 행위요건 또는 친경쟁요건 불이행 시 관련 사업자 소속 이사의 자격 박탈이나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경쟁시장청의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관련 사업자는 「기업법」에 따라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시사점

❍ 우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사후**에 **규제**하는 **규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영국**과 같이 특별히 디지털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여 친경쟁적 행위를 강제하거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개선책을 우리의 현행법에 도입하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2023년 12월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여 플랫폼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2024년 2월에 업계의 반대로 더 이상의 입법은 추진되지 않았으나, 2024년 5월에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아직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 **향후 우리도**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입법을 하려는 경우, 최근 제정된 **영국**의 **법률**을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는 법적 기준으로, 영국의 전략적 시장지위를 가진 'SMS 사업자' 지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의 유형과 법률집행 방법으로, 영국의 'SMS 사업자'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부과되는 행위요건 및 친경쟁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관련 자료

- 박상철, 플랫폼법, 저스티스 통권 제188호, 한국법학원, 2022
- 윤선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시행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측면에서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3
- House of Commons Library,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Bill: digital markets and competition provisions, Research Briefing, 2023

2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11호, 통권 제249호, 박진애】

◇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시민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의 '인헌고 사태', 청소년 참정권 논의,** 심각해지는 **청소년 혐오 표현** 등에 관한 **문제의식** 등과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어 왔다.

【인헌고 사태】

- 2019년에 발생한 인헌고 사태는 서울 관악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시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일베를 하느냐"며 면박을 주는 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 교사들의 정치편향과 사상주입 교육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학생수호연합이 이를 주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측 행동이 부적절했으나,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근거하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지원' 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내각에서 통과되어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 **독일의 법률안**은 민주주의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 장려, 사회적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예방 등을 위해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입법하기 위해 독일의 입법례가 유용한 참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주제어: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원,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방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촉진

□ 도입

❍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2조).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조례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조례는 2024년 6월 28일 기준으로 총 50건이 검색된다.

❍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사례**로는 2019년의 **‘인헌고 사태’ 청소년 참정권 논의**, **심각해지는 청소년 혐오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려는 **노력**은 2018년 교육부에 설치된 ‘민주시민 교육과’에서 발표한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종합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명목 **예산 20억 원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2022년 교육부 직제**에서 **인성체육예술과**로 **개칭**되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울산시의회의 경우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지 2년 4개월 만인 2023년 7월에 폐지하였다.

❍ 한편, **우리 국회**에서는 제15대 국회인 1998년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민주시민교육 지원과 관련한 **법안 9건을 발의**하였으나,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법률안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을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 1 민주시민교육 지원 관련 법안 발의 연혁

구분	의안명	제안의원(일자)	주요 내용
제15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박명환('98.10.31.)	국회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시민교육진흥법	김찬진('00.01.03.)	총리 소속 시민교육위 설치
제17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이은영('07.06.05.)	국회 소속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제19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이언주('15.01.22.)	독립기관인 교육위, 교육원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남인순('15.02.05.)	행자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제20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남인순('16.09.19.)	행자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소병훈('19.03.07.)	총리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제21대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남인순('20.06.01.)	행안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한병도('20.11.27.)	행안부 소속 민주시민교육위 설치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특징: '보이텔스바흐 합의'

❍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지 않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근간으로 하여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공식적인 의사 결정 및 투표 과정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1976년 바덴뷔템베르크주의 소도시인 보이텔스바흐에서 바덴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단체와 기관들이 학생교육의 공동지침을 마련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학교, 군대, 재단, 단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파를 초월하여 독일의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단순한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토론과 논쟁**을 통한 **'정치적 균형'**을 **추구**하며, **가지 원칙**(개방성, 다양성, 참여성)을 **명시**하고 있다.

표 2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지도원리인 보이텔스바흐 합의[9]

3가지 원칙	내용
1. 강압 금지(개방성) Überwältigungsverbot	• 학습자의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그 어떤 강압이나 세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논쟁성에 대한 요청(다양성) Kontroversitätsgebot	• 학문 및/또는 정치에서 논쟁이 되는 주제들은 교실에서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관점이 무시되거나 선택사항이 제한되고, 대안이 논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세뇌되기 쉽기 때문이다.
3. 학습자 지향(참여성) Teilnehmenden-Orientierung	• 학습자는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존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

1. 입법배경

❍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2022년 12월 14일 법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이다. 연방정부 제출 법률안의 명칭은 「민주주의의 증진,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방지 및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민주주의 증진법, DFördG, 이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이다

❍ **연방정부**는 **법안 발의**의 **배경**에 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반집시주의,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적대감, 동성애 혐오, 여성 혐오,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 및 우익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좌익 극단주의, 온라인 증오, 허위정보, 과학에 대한 음모화, 독일 헌법인 「기본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비합법화 시도** 등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적**인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시행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민주주의 문화와 다양성 및 자유가 넘치는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조달이 더 쉽고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주안점을 두어 동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심사 경과

❍ 독일 연방정부는 2022년 12월 14일 연방정부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다. 연방의회는 2023년 3월 16일 1차 독회(erste Lesung)를 마쳤고, 2024년 6월 말 현재 가족노인여성청소년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법률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투명성,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필요성 등에서 개선 의견을 내고 있다.

❍ 법률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교류 및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22년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와 연방내무부는 법률안에 대한 공동토론안을 마련하였다. 약 200여 개의 산하단체, 전문단체, 전문가들이 공동토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다양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3. 법안의 주요내용

1) 입법목적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은 독일 헌법인 **「기본법」**(GG)의 **규범과 가치**를 지키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독일 전역의 **사회통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제1항).

❍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지역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특정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민주주의의 보존 및 강화**, **민주시민교육**,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 및 집단 기반 적대 행위**의 **방지**, **사회적 다양성** 및 **참여**의 **조직화**를 위해 연방에 걸쳐 중요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제1조제2항).

❍ **법률안**은 기존의 예산에 기반한 정책과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제4조).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종전보다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 극단주의 예방, 정치교육, 사회적 다양성 및 참여 등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연방정부는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 기간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동 법률안은 연방정부가 민주주의를 증진·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2) 법안구성

❍ 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조 적용 범위
- 제2조 지원 대상
- 제3조 연방정부의 조치
- 제4조 자금 지원
- 제5조 지원 조건
- 제6조 재정 조달 및 연방예산법의 적용
- 제7조 관할 및 보조금 통지
- 제8조 모니터링 및 보고
- 제9조 시행일

3) 지원 대상

❍ **연방정부**의 **지원 대상**은 독일 연방에 걸쳐 중요성을 가지고, 특히 다음과 같은 **9가지 내용**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독일 전역**의 **시민사회단체**이다(제2조). 법률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의하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9가지 예시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1. 민주적 문화, 민주적 가치 및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 기능 및 자유에 대한 중요성 강화 및 증진
2. 기능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법치 및 법의 역할에 대한 토론 활성화
3.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의지 강화
4.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 및 집단 중심의 혐오와 관련된 차별 방지 및 대응
5. 사회적 다양성을 형성하고 인정하며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와 자립·자결권을 존중하는 상호작용 촉진
6. 민주주의 증진, 다양성 형성, 극단주의 예방 및 교육 지원 담당자들의 지식 이전, 자격 및 네트워킹 강화
7.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비인도적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조직에 조언·지원하는 초지역적 구조 강화
8. 독일 전역에서 정치적, 이념적 동기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 등에게 조언·지원하는 초지역적 구조 강화
9. 극단주의 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지원하는 초지역적 구조 강화

4) 지원 조건 및 내용

❍ **연방정부**는 **공법(公法)** 및 **사법(私法) 법인**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공법인(公法人)인** 정치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연방예산법 및 예산위원회(Haushaltsausschuss)의 결정에 따라 글로벌 보조금(Globalzuschüsse)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사법인(私法人)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2조).

- 기본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 독일 세무 당국에서 「조세법」(AO)21) 제51조~제68조에서 의미하는 비영리 등의 목적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자이거나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재정, 작업 수행 결과 및 조치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재정 지원은 주로 보조금(Zuschüsse)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재정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 계약, 회의시설 제공 또는 현물 지원 등이 있다.

5) 지원 방식 및 모니터링

❍ 관할 **최고 연방당국**은 이 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조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 지침은 **자금 지원**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사전에 적절한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제4조).

❍ **법률안**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규모**와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번 **연방예산법**에 따라 **재정**을 **조달**하고, 연방예산법 **규정**의 **변경 없이 시행**한다.

❍ **법률안**의 규정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관할권**을 **특정 연방 기관**이나 **당국**에 **위임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최고 기관이 각각의 책임 분야 내에서 이 법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통지를 할 때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7조).

❍ **자금 지원 프로그램** 및 **유사한 조치**는 **자금 지원**을 하는 **기관**이 **책임**지고 **평가**한다. 특히 지원 조치의 이행,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시행된 조치의 결과를 **4년마다 독일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제8조). 이 법은 공포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제9조).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민주시민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제15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시민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민주시민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금까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법적 규정 없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연방 전반에 걸친 재정지원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논의**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독일 입법례를 참조할 만하다.

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02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 정창화, 독일의 국가통일과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9. 12. 30.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1.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첫째주	외교통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회의 의미와 과제 ○ 모디 3기 인도의 대외전략 전망과 시사점 ○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 의미와 전망 ○ EU의 확대 : 지정학적 기회와 위험 ○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제 실태 ○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분석 ○ 중러 정상회담 평가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국의 對아세안 및 멕시코 투자확대에 따른 영향 ○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 안정대책의 시사점 ○ 지진 대비를 위한 농업 부문의 과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유럽, 우주에서 성장의 답을 찾다 ○ 초순수 = Ultrapure water
	보건복지, 행정안전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효과평가와 발전방안
	외교통일, 국방	○ 푸틴의 평양 방문과 러·북 관계 전망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 세종시 야간관광 발전전략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국의 리튬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
	정무	○ 글로벌 금융사의 핵심 고객으로 부상하는 Z세대 ○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첫째주	국방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한국형 '아이언 돔'에 주는 시사점 ○ 최근 북한의 대남 '저강도 다발성' 도발 ○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국토교통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개선 방안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서울시 도심 거점 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 ○ 디지털&녹색 전환시대,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 사업화 촉진방안
7월 둘째주	환경노동, 행정안전	○ 대전광역시 중장년 창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정책 연구 ○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
	외교통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 자유주의 안보질서 전환기와 우리의 대응 ○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모색 ○격자 울타리 동맹과 미국의 역량 : 패권의 강화일까 약화일까? ○ 김주애의 북한 내 위상과 4대 권력세습 전망 ○ 북·러동맹 복원과 한국의 대응 ○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 북한의 2국가론과 통일인식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	○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 중국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의 특징 및 시사점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 ○일본 자동차 산업의 모빌리티 DX 전략
	기획재정	○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 중국 경제의 '뉴노멀' :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 (2024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 AI 시대 데이터 센터 트렌드와 주요 이슈 ○ 생성형 AI 거버넌스의 가치와 책임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한 프레임워크
	여성가족	○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 인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방향
	국토교통, 행정안전	○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서울형 소득 연동 임대료체계 구상 ○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지구제도 확대·개편 방안
	정무, 기획재정	○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둘째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행정안전	○그린바이오·푸드테크 정책동향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시사점
	보건복지	○해외 저출생 대책과 경기도 시사점
7월 셋째주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의 전략 현황 ○배터리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행정안전	○청년 인식 심층분석을 통한 대전 이주와 정주 지속 영향 요인 탐색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채용공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SW융합인력 수요 현황과 시사점 ○AI가 견인하는 HBM 시장 현황 및 전망 ○로봇산업 정책동향. 2024-06, 호주 「국가로봇전략」의 주요내용 분석
	환경노동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외교통일	○미국 유권자와 한미동맹 ○마크롱 대통령 연설을 통해 본 글로벌 정세와 시사점 ○(2024)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 결과 및 대선 전망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평가
	보건복지, 행정안전	○경상북도 1인가구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인천시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방안 ○경기북부 바이오헬스 산업현황과 발전방안
	여성가족, 행정안전	○경북지역 고려인 자녀돌봄에 관한 연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문화체육관광	○프랑스 콘텐츠 산업동향. 2024년 02호,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 및 산업 동향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로봇산업 도약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 ○AI 확산과 전력수요에 대응한 경북의 전략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셋째주	국방	○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비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탈차이나를 위한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방향 ○ 사례로 보는 미국 공급망 재편 동향
	정보,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데이터 안보와 국제통상 : 현안과 시사점
	환경노동, 국토교통	○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공간전략 강화방안
	여성가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노인돌봄과 과학기술 : 이용자 중심의 성인지적 기술 개발·활용 위한 일본 정책의 시사점
	여성가족	○ 2030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전망과 과제
	환경노동, 행정안전	○ 택소노미(Taxonomy) 적응을 위한 부산의 전략과 과제
	외교통일, 국방	○ 필리핀의 친미·반중 행보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 워싱턴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전략적 함의
	국방	○ NCG 제3차 회의의 의미 및 향후 정책과제 ○ 합동타격함(JSS)과 재래식 전략 억제에 대한 해상 기여
	외교통일	○ (2024년) 영국 조기 총선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 ○ (2015~2024)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분석 ○ 미국 대선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 KINU 북한 동향 (2024년 상반기) / [통일연구원(KINU)]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최종 합의 : 미국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투영과 함의 분석 ○ '미국우선 대외정책 2.0'의 주요 내용 및 함의 ○ 2024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하반기 전망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넷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딥러닝 기반 도로침수심 분석 모델 개발과 서울시 활용 방안 ○서울시 자율주행 전용 네트워크 구축 방향
	교육	○KICE 교육데이터 활용 지원 방안 탐색
	정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국가안보와 지식재산 제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4년 현안 점검
	법제사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EU AI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배리어 프리, 장애로 인한 장애 없는 금융생활
	여성가족, 행정안전	○제주지역 가정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방안 연구
	행정안전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 ○(2023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환경노동, 행정안전	○경기도 산업기술인력 현황과 시사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장기화 가능성 점검
	환경노동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건복지	○인도 원료의약품(API) 자급화 정책 동향과 시사점
	여성가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7월 다섯째주	국방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 ○(K·방산 수출 확대와 연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정무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국토교통, 행정안전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해외 AI안전연구소 추진 현황과 시사점
	정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바라본 정보기관의 역할
	환경노동,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기후변화 리스크의 부산지역 주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
	환경노동, 행정안전	○폭염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경북 맞춤형 폭염대응방안
	국방, 정보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
	보건복지	○우리나라 치과의료 산업의 동향과 전망 ○120세 시대, 장수혁명이 가져올 미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환경노동	○농촌지역 고용 특성과 농업 인력수요 전망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2023) 북한 대외무역 동향 ○중국의 저공 경제(Low-Altitude Economy) 육성 현황 및 시사점
	환경노동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
	외교통일	○(2024) 프랑스 총선 결과 및 영향 분석 ○영국 14년 만의 정권교체, 노동당 정부의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와 진보적 현실주의
	여성가족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 의회 도서 자료실 신착 도서 목록

※ 2024년 7월 신착 도서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도서는 자료실에서 대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1	착한 조례 만들기	유 상 조	시간의물레
2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김 종 갑	경인문화사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 방안 연구	전 대 욱 , 권 오 철 , 김 필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4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이 원 도 , 유 수 동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5	**지방의회자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자치입법권및자치조직권을중심으로	주 희 진 , 고 경 훈 , 정 기 용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6	**지역의 반란** : 지방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난 한국과 일본의 15개 지역	엄 상 용	컬처플러스
7	행정이 인문을 만나다	이 승 재	창조와지식 (북모아)
8	**통합정치와 리더십** : 경합과 협치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유 재 일	운주사
9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현실** : 윤석열 정부 2년, 언론 자유의 인식과 실태	이 정 기	이담북스
10	**열린 민주주의**: 21세기 민주주의의 재발명	엘렌 랜드 모 어 ; 남상백옮김	다른백년
1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 블 랫	어크로스
12	젊치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웨이즈	위즈덤하우스
13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에 대하여	프 랜 시 스 후 쿠 야 마 ; 이규경 옮김	한국경제신문
14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가 기록한 참여정부의 결정적 순간들	이정우	한겨레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15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모든 것**	도브 왁스만 ;장정문옮김	소우주
16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	조 병 제	월요일의꿈
17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	이창현 외	푸른나무
18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 진 한	지와인
19	**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최 경 호	자음과모음
20	**엄마 아닌 여자들** : 역사에 늘 존재했던 자녀 없는 삶	페기 오도널 헤 핑 턴 ;아나경 옮김	북다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신 선 웅	한국학술정보
22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	강 지 나	돌베개
23	가장 낯선 이웃, 한국	양 즈 창 ;박우현옮김	잉걸
24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	임 주 영	민들레북
25	**스미스의 국부론**: 인간 노동이 부를 낳는다	이 재 유	EBS books
26	**계량경제학**: 이론과 활용	남 준 우 , 허 인	홍문사
27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 철 희	위즈덤하우스
28	**역사는 돈이다** : 명분과 위선을 걷어내고 읽는 진짜 세계사	강 승 준	잇콘
29	**대한민국 돈의 역사** :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홍 춘 욱	상상스퀘어
30	백지에 그리는 국가인재생태계 2035	민경찬 외	초아
31	**진짜 노동** : 적게 일해도 되는 사회, 적게 일해야 하는 사회	데 니 스 뇌르마르크 ;손화수 옮김	자음과모음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32	반도체 주권국가	박영선, 강성천, 차정훈	나남
33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 원점을 말하다	이나모리 가즈오;양준호옮김	21세기북스 (북이십일)
34	일의 기본 생활의 기본 100	마쓰우라 야타로;오근영옮김	책읽는수요일 (한국물가정보)
35	**질문 있는 사람** : 나를 알아가는 시간, 셀프 인터뷰	이승희	북스톤
36	**인플루언서 탐구** : '좋아요'와 구독의 알고리즘	올리비아 얄롭;김지선옮김	소소의책
37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 방안	김도형, 양원탁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38	**소셜 비헤이비어**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시대를 위한 브랜딩 안내서	김성준, 홍현경	Whale books(웨일북)
39	**병원도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 환자에서 고객이 되는 서비스 디자인 씽킹	박병태, 권영미	현암사
40	**돈의 권력** : 화폐의 힘이 만들어낸 승자독식의 세계	폴 시어드;이정훈옮김	다산북스
41	**머니테이커** : 월 180 직장인이 상위 1%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	정승요(머니테이커)	RISE(떠오름)
42	**매주 달러 받는 배당주 통장** : 미국 배당주 알짜 기업 213을 알면 수익 나는 전략이 보인다	장우석	페이지2북스
43	**머니스톰**: 40년 만에 찾아온 부의 변곡점	김한진, 송주연	page2(페이지2)
44	**국민연금 가치 선언**: 불안을 넘어 연대와 공존으로	제갈현숙, 주은선, 이은주	동아시아
45	(2024년)**지방세 이렇게 달라진다**	유상조, 윤여문, 최한슬	박영사
46	**포스트트루스**: 가짜 뉴스와 탈진실의 시대	리 매킨타이어;김재경옮김	두리반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47	**친애하는 슐츠 씨** : 오래된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	박 상 현	어크로스
48	**치유산업에서 길을 찾다** : 관광·음식·농업부터 산림·해양 치유까지 웰니스 트렌드	김 재 수	매일경제 신문사
49	**AI시대의 통계적 예측**: 시계열의 인공신경망 예측	김해경 외	불광출판사
50	가짜뉴스의 사회학	박 창 호	서울경제경영
51	**솔로 에이저** :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사라 제프게 버;배상윤옮김	천년의상상
52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전 수 경	좋은땅
53	하나의 수어에 다의어가 포함된 수어국어사전	김 영 미	좋은땅
54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	박 준 홍	북스고
55	**제가 만든 GPT는 당신이 만든 GPT와 전혀 다릅니다** : 상위 1% GPT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유 호 석	Re:commend(리코멘드)
56	출판기획의 한계를 넘어	이 시 후	투데이북스
57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 : 희귀서적 수집가가 안내하는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저속하며 발칙한 책들의세계	에드워드 브룩-히칭;최세희 옮김	갈라파고스
58	**감으로 읽고 각으로 쓴다** : 활자중독자 김미옥의 읽기, 쓰기의 감각	김 미 옥	파람북
59	**현자들의 죽음**: 소크라테스에서 붓다까지	고 미 숙	EBS Books(한국교육방송공사)
60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차경아옮김	까치
61	**가득 찼어도 텅 빈 듯이**: 신부님의 동양철학 수업	최 성 준	분도출판사
62	**완벽한 대화의 비밀** : 소통이 서툰 이들을 위한 기적의 대화법	황 시 투 안;정영재옮김	파인북
63	**양수인간**: 삶의 격을 높이는 내면 변화 심리학	최 설 민	북모먼트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64	**놀라움의 힘**: 내 삶을 바꾸는 놀라움의 비밀	마이클 루셀 ;김지연옮김	상상스퀘어
65	이어령의 강의	이어령	열림원
66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 찬란한 생의 끝에 만난 마지막 문장들	한스 할터 ;한윤진옮김	포레스트북스
67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강성용	불광
68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원영	불광
69	보현행원품과 마음공부	법상 글	민족사
70	**진짜 나를 찾아라** : 법정 스님 미공개 강연록	법정	샘터사
71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신애라	규장
72	**환영합니다 성령님** : 당신이 알아야 할 성령님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든 것	손기철	규장
73	**김범준의 물리 장난감** : 일상 속 사물들에서 찾은 신기한 과학 원리	김범준	이김
74	**시계열 예측과 분석** : 통계적 모형・혼합형 모형・딥러닝 모형	박유성	자유아카데미
75	**제철 행복** : 가장 알맞은 시절에 건네는 스물네 번의 다정한 안부	김신지	인플루엔셜
76	**기후 돌봄** : 거친 파도를 다 같이 넘어가는 법	신지혜 외 ;우석영엮음	산현글방 (산현재)
77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 순간의 감정부터 일생의 변화까지, 내 삶을 지배하는 호르몬의 모든 것	막스 니우 도르프 ;배명자옮김	어크로스
78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32가지 생물학 이야기**	이나가키 히데히로 ; 서유지옮김	사람과나무사이
79	**유전자 지배 사회**: 정치・경제・문화를 움직이는 이기적 유전자, 그에 반항하는 인간	최정균	동아시아
80	최재천의 곤충사회	최재천	열림원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81	**의학의 대가들**: 심장병부터 출산까지 인류의 가장 위험한 적과 싸운 의사들의 이야기	앤드루 램 ;서종민옮김	상상스퀘어
82	**질병 해방**: 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파터 아티아, 빌 기퍼드 ;아한음 옮김	부키
83	**나라는 착각** : 뇌는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발명하는가	그레고리 번스 ;홍우진옮김	흐름출판
84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생후배선의 비밀	데이비드 이글먼 ;김승욱옮김	알에이치 코리아
85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전 홍 준	서울셀렉션
86	(머리 심는 정신과 의사 기문상 원장의) **진료실 탈모 이야기**	기 문 상	엠디월드
87	**도파민네이션**: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애나 렘키 ;김두완옮김	흐름출판
88	**마흔, 달라진 몸을 되돌릴 때** :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삶은 무엇이 다른가	정 이 안	더퀘스트 (길벗)
89	**쓸모의 과학, 신소재**: 세상에 이로운 신소재 이야기	조 용 수	교보문고
90	**세계속의 위대한 공학자 50인**: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다	폴 비르, 윌리엄 포터 ;권기균 옮김	리스컴
91	**2030 기후적응 시대가 온다** : 종말로 치닫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김 기 범	추수밭 (청림출판)
92	**웨이스트 랜드** : 쓰레기는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올 리 버 프랭클린 - 윌 리 스 ;김문주 옮김	RHK (알에이치코리아)
93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 : 패션 디자이너의 특별한 옷 이야기	정 연 이	에코리브로
94	**손뜨개, 처음이어도 괜찮아** : 해피마마의 다정한 손뜨개 레슨	해 피 마 마 ;남궁[illegible]옮김	즐거운상상
95	**부모 말하기 연습** : 초4부터 중3까지 건강한 사춘기를 위한 부모 수업	김 하 영	서사원
96	**챗GPT 문화・예술・교육 인사이트** : AI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의 대전환	박 은 정	책바세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97	**초현실주의 팝업 갤러리** : 팝업북 아티스트 제라르 로 모나코	제라르로 모나코 ;최윤경역	문예출판사
98	**모던 빠리** : 예술의 흐름을 바꾼 열두 편의 전시	박재연 글	현암사
99	(홍차로 시작된)**영국 왕실 도자기 이야기** : 영국에서 꽃을 피운 명품 테이블웨어의 총 역사!	Cha Tea 紅茶教室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100	**아름다운 서양 식기의 세계** : 서양 식기로 보는 미술 양식과 세계사	카노 아미코, 겐바 에미코 ; 박서영, 김경철 옮김	클라우드나인
101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 애호가가 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미술관 수업	김 찬 용	땡스B
102	**만질 수 있는 생각**: 그림책 작가 이수지 에세이	이 수 지	비룡소
103	**내 인생을 빛내줄 스마트폰 사진** : 실패 없는 구도와 감성 색감 보정으로 사진 잘 찍는 법	크리에이터 담이 글 · 사진	빌리버튼
104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2	무라카미 하루키 ;홍은주옮김	문학동네
105	**재즈의 도시** : 변화의 도시 뉴욕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	김소리 글	파이퍼프레스
106	**오케스트라 좋아하세요?** : 세상에서 가장 큰 악기 오케스트라의 모든 것	미츠토미 도시로 ;이언숙옮김	열대림
107	**상상력의 기원, 마술**: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17년	백 현 충	세종
108	(나병관 프로의)**탈골 스윙** : 아마추어 골퍼와 프로 지망생을 위한 인생 레슨서	나 병 관	싸이프레스
109	**웹 문서, 모바일 문장 제대로 고쳐쓰기**: 바른 우리말	박 기 원	투데이북스
110	**일본 문화로 알아보는 일본어의 속성** : 일본으로 떠나기 전, 꼭 읽어야 하는 문화와 언어 이야기	이 은 도	북랩
111	(하루 5분의 기적) **키위엔 영어표현**	박 강 준	키위엔
112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 : 맥락과 뉘앙스가 살아나는 진짜 영어 말하기 수업	빨간모자쌤 신 용 하	웅진지식 하우스
113	(스페인 여행 제대로 즐기는) **여행 스페인어**	장 선 이	시원스쿨닷컴

순	도 서 명	지은이	출판사
114	**우아한 단어 품격있는 말** : 말맛은 살리고 표현은 섬세해지는 우리말 수업	박 영 수	유노책주
115	**숙론**: 어떻게 마주 앉아 대화할 것인가	최 재 천	김영사
116	오늘도 나는 집으로 간다	나 태 주	열림원
117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도종환 시집	도 종 환	창비
118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한 적	이 병 률	문학과지성사
119	미래의 손	차 도 하	봄날의책
120	산재일기	이 철	아를
121	**나목**: 박완서 장편소설	박 완 서	세계사
122	**문신**: 윤흥길 장편소설. 1-5권	윤 흥 길	문학동네
123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김기태 소설	김 기 태	문학동네
124	**내일의 으뜸**: 김빵 장편소설	김 빵	다향
125	**느티나무 수호대**: 김중미 장편소설	김 중 미	돌베개
126	**나의 돈키호테**: 김호연 장편소설	김 호 연	나무옆의자
127	**인성에 비해 잘 풀린 사람**: 월급사실주의 2024	남궁인 외	문학동네
128	**백년해로외전**: 박민정 장편소설	박 민 정	문학동네
129	**후예**: 이석규 역사소설. 1, 2권	이 석 규	청어
130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이주혜 장편소설	이 주 혜	창비
131	**김섬과 박혜람**: 임택수 장편소설	임 택 수	나무옆의자
132	**입속 지느러미**: 조예은 장편소설	조 예 은	한겨레
133	**묵계**: 최성현 장편소설. 1. 한양의 사람들	최 성 현	황금가지
134	**허송세월**: 김훈 산문	김 훈	나남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135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세나 에세이	굳 세 나	테라코타
136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 돈, 명예, 시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에 관하여	김 도 윤	책읽어주는남자 (북로망스)
137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 마흔에 맞닥뜨린 암, 돌아보고 살펴본 가족과 일 그리고 몸에 관한 일기	김 진 방	따비
13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았어	박 채 린	북플레저
139	**밥 먹다가, 울컥**: 기어이 차오른 오래된 이야기	박 찬 일	웅진지식 하우스
140	이상한 동물원의 행복한 수의사	변 재 원	김영사
141	아무튼, 영양제 : 영양제 먹었니?	오 지 은	위고
142	내게 말을 거는 여행의 장소	우 지 연	행복우물
143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이 서 원	나무사이
144	**슬픔의 방문**: 장일호 에세이	장 일 호	낮은산
145	**나쓰메 소세키 기담집** : 기이하고 아름다운 열세 가지 이야기	나쓰메 소세키 ; 히가시 마사오 엮음	글항아리
146	**고비키초의 복수**: 나가이 사야코 장편소설	나가이 사야 코 ;김은모옮김	은행나무
147	**바다가 들리는 편의점**. 2, 3권	마치다 소노 코 ;황국영옮김	모모 (바이포엠 스튜디오)
148	녹나무의 여신	히가시노 게이고 ;양윤옥옮김	㈜소미미디어
149	**누구나의 일생** : 오늘이 소중한 이야기	마스다 미리 ;박정임옮김	새의노래
150	**리틀 라이프** : 한야 야나기하라 장편소설. 1, 2권	한야 야나기 하라 ;권진아옮김	시공사

순	도 서 명	지 은 이	출 판 사
151	**김가네.**1, 2권	블라디미르 김 용 택 ;손은정옮김	학고방
152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어디에도 없는 고고학 이야기	강 인 욱	흐름
153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 학예사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속 환상동물 이야기	김 용 덕	담앤북스
154	**서울의 자서전** : 조선의 눈으로 걷다	신 병 주	글항아리
155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9, 10권	금 현 진 , 김 진 글 ;이우일그림	사회평론
156	용선생 만화 한국사. 1 - 8권	박 동 명 , 정 상 민 , 송용운 글 ; 문정완 그림	사회평론
157	**땅의 역사. 7**, 삭제된 기억들	박 종 인 글 · 사 진	상상
158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28, 29권**	설 민 석 , 스토리박스 글 ;정현희 그림	단꿈아이
159	**아주 짧은 소련사** : 러시아혁명부터 페레스트로이카까지, 순식간에 사라진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적 현장	실라 피츠 패 트 릭 ;안종희옮김	롤러코스트
160	**아무튼 제주**: 일 년의 반은 제주살이	엄 봉 애	푸른향기
161	Jeju highlight	현 광 수 , 금 성 현	용감한까치
162	**천천히 교토 산책**: 걷고 맛보고 즐기는 나만의 교토 여행	원 경 혜	BOOKERS (북커스)
163	**그리스 인문 기행** : 고전 들고 떠나는 헬로폰네소스 유랑기 1	남 기 환	상상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의견24-0196, 2024. 6. 25.]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 가~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

출연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제1호)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자·출연 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뿐**이고, **그 외의 기관·단체**에 **제출**하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조례**로 **출자·출연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감사(제15조의3),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성립·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제18조제4항),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에 대한 승인

(제22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제25조) 및 검사(제26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출자·출연 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제2호),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18쪽), 그중 이자수입의 경우 출연기관에 귀속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19쪽),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방출자출연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제1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같은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제2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려는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그 권한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검사의 실시 여부, 검사 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위법령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검사의 시행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 검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2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견24-0175, 2024. 7. 10.]

□ 질의요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조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천시조례”라 한다) 제5조에서는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비가 1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인 기업(제1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시 출연금(제1호),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제2호), 그 밖의 수입금

(제3호)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이천시조례시행규칙안”이라 한다)에서는 제7조를 **신설**하여 이천시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출연**하여 **기금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천시조례시행규칙안 제7조의 규정 의미가 이천시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도록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만약 이천시조례시행규칙안 제7조가 이천시장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는 그러한 조건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대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곧바로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한다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익금을 반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익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해당 내용을 **자치법규**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이천시조례시행규칙안 제7조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연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반법인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자치법규**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천시 조례시행규칙안**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기금**에 **출연**하여 **기금 재원 마련**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판단 기준**, 구체적인 **출연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인 법집행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 ③ (생 략)

④ 삭제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 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24-0015, 2024. 6. 26., 식품의약품안전처】

□ 질의요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식품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함)가 같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함)에 대한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1차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나목에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등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등**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4)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은 **식품접객업자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별표 17 제7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1차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접객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음식점영업자"라 함)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4)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 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 이유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식품접객업)의 표 제10호가목에서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 · 파목 · 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부터 12)까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괄호에서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같은 목**의 **위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괄호 앞부분의 **“**별표 17 제7호자목 · 파목 · 머목**”** 부분은 **조항**을 **특정**하여 **명시**하면서 이와 달리 **괄호 뒷부분**에서는 **“별도로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라고만 하여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법령**을 **식품위생법령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법령을 특정하거나 예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규정**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식품위생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에서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나목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식품접객업자”**였던 반면, 당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이었던바, **구 식품위생법령** 및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각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83호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제정**하여 같은 법 제4조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통합**하여 **이관**하면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서 **"식품접객업자"**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동시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로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연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식품표시광고법령**에 **"식품접객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령**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도 **행정처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의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러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등의 표시와 관련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과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두 개**의 **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어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 및 **제재처분**의 **기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1)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식품접객업자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1. ~ 3. (생 략)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식품·축산물·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나) (생 략) 2) (생 략)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 6. (생 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 략)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 모. (생 략)

8. (생 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Ⅱ. 개별기준

1.·2. (생 략)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 3) (생 략)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 3)·4), 하목, 어목, 저목 또는 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생 략)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민원인 24-0353, 2024. 7. 9.,】

□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같은 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합공사업자”**라 함)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같은 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발주자로서 **종합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전문공사업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발주자가 발주한 **종합공사 중 일부인 전문공사**를 **발주자**가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급”**을 **정의**하면서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하도급”의 의미**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3자로 제한**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하고 있고(제29조제6항 본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제1항),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제35조제1항 · 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동일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 본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 15. (생 략)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